##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 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간등)·특수 강도·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 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2.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 【전문】

【피고인】

【검사】김명석

【변 호 인】변호사 송종선(국선)

##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1자 드라이버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1

[이유]

1

[이유]

1

[이유]

1

[이유]

]

[이유]

1

[이유]

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